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훈련 의무이수자 범위 확대〉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61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교육훈련 의무이수자 범위 확대	2
※ 참고자료	
[참고1] 농식품유통교육훈련사업 시행지침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27.
3. 회 부 일 : 2024. 8.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Ⅲ. 검토의견

1. 교육훈련 의무이수자 범위 확대

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로 하여금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교육훈련 의무이수자의 범위에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임용 또는 임명된 자’,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75조).

현 행	개 정 안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u>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u> ----- -----.
<신 설>	1. <u>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u>
<신 설>	2. <u>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임용 또는</u>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u>절차</u>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u>임명된 자</u>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u>시기, 절차</u>-----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의 신규 도매시장 법인 임원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여 각 유통주체가 교육 이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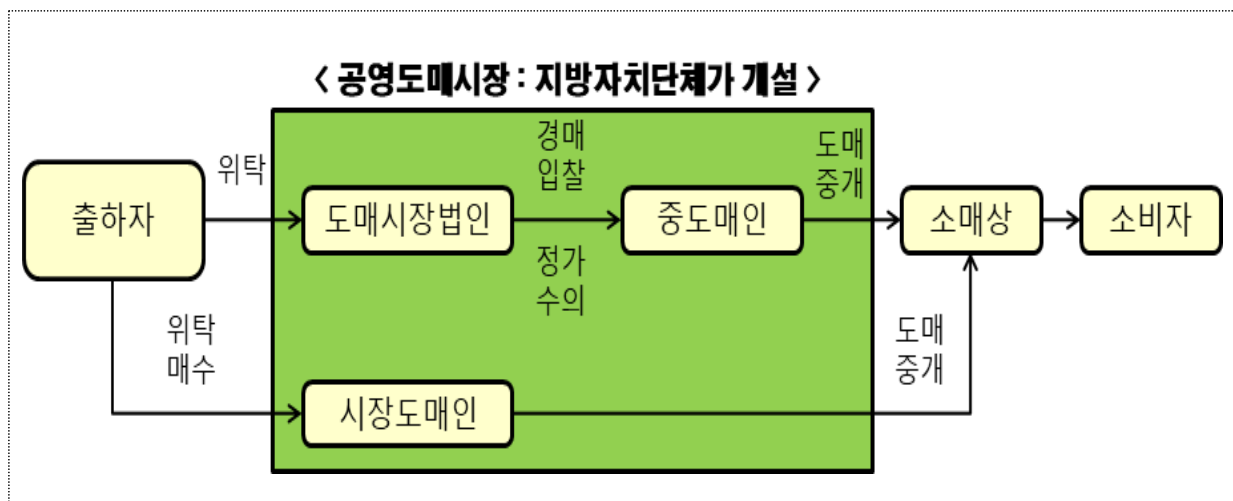
나. 개정안 관련 현황

개정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공영도매시장 내 활동 주체들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된 공영도매시장 유통주체에는 ① 도매시장법인, ② 공판장, ③ 시장도매인, ④ 중도매인이 있으며, 유통주체별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개정안 관련 교육훈련 대상자 개념 >

구 분	개념
도매시장법인	출하자로부터 농산물을 수집(위탁 또는 매수 방식)하고, 경매·입찰·정가·수의매매의 방법으로 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하는 자
공판장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
시장도매인	도매시장법인(수집)과 중도매인(분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자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수집된 농산물을 구매하여 소매상에게 판매(분산)하는 자(특수한 경우 상장예외거래를 통해 직접 수집·판매 가능)

< 공영도매시장 유통구조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0. 4.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75조제2항¹⁾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로 하여금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²⁾(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제50조제3항후단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②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매사, 중도매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교육훈련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2. 경매사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4. 산지유통인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7.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1년(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임용·임명 또는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에게도 그 임용·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교육훈련 관련 농안법·시행규칙 내용 >

구 분	법률 조항	시행규칙 조항
교육훈련 대상자 (임의규정)	법 제75조제1항 경매사, 중도매인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유통 종사자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경매사,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교육훈련 이수 의무자 (의무규정)	법 제75조제2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시행규칙 제50조제3항후단 ①~③에게 교육훈련 이수 의무 추가 규정(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②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와 같이 법률과 시행규칙은 교육훈련 이수 의무자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규율하고 있음.

이는 교육훈련 이수 의무에 대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8년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종류의 유통주체³⁾에 대하여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여⁴⁾함으로써 법률과 시행규칙 간 괴리가 발생한

3) ①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것에서 시작됨.

이후 경매사의 업무에 정가매매·수의매매(隨意賣買)가 추가되는 등 경매사의 역할이 커지고 도매시장을 둘러싼 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신규 임용된 경매사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매사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2018년도에 ‘경매사(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임명)’에 대하여는 법률로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2018. 12. 31., 시행 2019. 7. 1.)되었음. 그 결과 ① ‘경매사’의 교육훈련 이수 의무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즉, 종전부터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⑥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는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에 포섭되어, 모두 의무적인 교육훈련 이수 대상자가 됨.

그러나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는 여전히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과받고 있음.

4) 당시 법률에는 교육훈련 이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음.

< 시행규칙 · 법률 · 개정안 규율대상 비교 >

대 상		시행규칙 (1988~)	법률 (2019~) ⇒ 개정안
① 경매사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	○
	㉡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	○ (위 경매사에 포함됨)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	×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		○	×

교육훈련 대상자인 3종류의 유통주체별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이 중 법률상의 교육훈련 이수 의무자인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
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만이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훈련 미이수 시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
지 않음.

< 교육훈련 대상자 별 교육내용 >

구 분	대 상	교육 내용	과태료
교육훈련 대상자 (임의 대상자)	- 산지유통인 -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 농수산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 스마트 APC의 이해 - 산지조직 핵심인력 양성 - 주산지 전문인력 양성 - 산지유통 전문경영인 양성 - 로컬푸드 직매장 기획생산 및 공급체계 구축전략 - 농산 자조금단체 전문인력 양성 - 농식품 소용량·소포장 상품화 사례 분석 - 농식품 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과 영업전략	미이수 시 과태료×
교육훈련 이수 의무자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 도매시장 정책 - 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 국내·외 도매시장 트렌드 - 산지(출하주) 및 중도매인 관리	미이수 시 과태료○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 또는 임명된 자	- 도매시장 정책 -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객 관리 - 마케팅	미이수 시 과태료×
	③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 농산물 유통 정책방향 - 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 거래제도의 이해 및 활용 - 농산물 소비 트렌드 - 중도매인 회계·세무	미이수 시 과태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0. 4.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행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산하 농수산물식품유통교육원은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법률),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시행규칙),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시행규칙)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각 교육과정은 총교육비⁵⁾ 중 일부(20%)⁶⁾를 자부담하는 구조로, 교육훈련 대상자는 28,800원부터 46,000원까지 부담하게 됨. 2023년의 경우 경매사는 502명, 신규 임원은 21명, 중도매인은 197명 교육훈련을 이수함.

< 2023년 농수산물식품유통교육원 법정교육 운영 현황 >

(단위 : 명, %, 천원)

과 정 명	근거	교육일수	2023년 교육실적			총 교육비	자 부담액
			등록	이수	이수율		
①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사	법률	집합(1박2일)	504	502	99.6	230	46
② 농산물 도매시장 신규임원	시행규칙	집합(1박2일)	21	21	100	230	46
③ 농산물 중도매인	시행규칙	온라인(이러닝)	200	197	98.5	144	2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0. 4.

이는 법률에 교육훈련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함)로 하여금 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5) 교육일수에 따라 강사료, 교통비, 교재비, 식비, 과정운영비, 저작권료 및 콘텐츠제작비(이러닝)를 포함하여 단기 교육과정비(총교육비)를 책정하고, 교육과정비의 20%를 자부담 비용으로 부과

6) 다만, 기획재정부 예산심의 결과 2024년부터 교육생 자부담률은 20%에서 50%로 상향됨

이에 개정안은 교육훈련 이수 의무자에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의 임원으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를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7)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교육훈련 이수 의무는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라 각 유통주체 교육훈련 이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도매시장의 각 유통주체는 도매시장 관련 정책·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도매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유통주체별 의무교육 내용 >

○ (경매사) 농산물 도매시장육성 정책 및 소비 트렌드 등 유통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경매사의 농산물 유통관리 실무역량을 향상			
교 과 목	세 부 내 용	시간(9H)	학습방법
도매시장 정책	- 농안법과 정부의 도매시장 정책 방향 - 농산물 유통구조 과제 개선방안	2	강의 (정책)
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이해 - 전자송품장으로 보는 출하정보 디지털화	1	강의 (정책)
국내·외 도매시장 트렌드	- 소비 트렌드 등 유통환경의 변화 - 농산물 유통 소비시장 전망 - 국내외 도매시장의 주 거래제도	2	강의 (실무)
산지(출하주) 및 중도매인 관리	- 경매사의 역할 및 직업윤리 - 출하주·중도매인 민원처리 실사례 공유	2	강의 (실무)
분임 토의 및 사례 발표	- 경매사 현황 및 경매사 업무의 변화 - 도매시장의 발전방향 분임 토의 - 경매사 실제 성공·실패 사례 공유	2	실습 (토의)

7)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신규임원)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도매시장 정책을 이해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 판매활성화 전략 습득으로 경영 성과 제고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9H)	학습방법
도매시장 정책	- 농안법과 정부의 도매시장 정책방향 - 도매시장 정책 실제 현장 적용 등 공유	2	강의 (정책)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방안 - 국내·외 도매시장의 유통환경의 변화	2	강의 (실무)
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 전자송품장으로 보는 출하정보 디지털화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이해	1	강의 (정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고객관리	- 고객관리 커뮤니케이션 기법 - 내·외부 고객 소통법	3	강의 (실무)
마케팅	소비자 구매 트렌드를 반영한 판매 활성화 전략	2	강의 (실무)

- (중도매인) 정부의 도매시장 육성 정책, 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이해하고 유통 소비 트렌드, 세무 지식 등을 습득하여 영업 활성화 도모

교과목	세부내용	시간(9H)	학습방법
농산물 유통 정책방향	- 정부의 도매시장 정책 방향 - 중도매인의 역할 및 직업 윤리	2	강의 (정책)
도매시장 디지털 혁신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이해 - 전자송품장으로 보는 출하정보 디지털화	1	강의 (정책)
거래제도의 이해 및 활용	- 정가수의매매 현황 및 필요성 - 정가수의매매 사례 및 확대 방안	1	강의 (정책)
농산물 소비 트렌드	- 국내·외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 이해 -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2	강의 (실무)
중도매인 회계·세무	- 중도매인의 회계용어와 원리,세무 신고 - 실제 모범사례 등을 통한 벤치마킹	2	실습 (토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2024. 10. 25.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는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의 내용을 삭제할 예정이라는 입장⁸⁾임. 이 경우 ① 경매사를 제외한 ② 도매시장 신규임원 ③ 중도매인의 의무적 교육은 폐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시행규칙 개정추이를 감안하여 개정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8)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상의 의무교육 규정은 공영도매시장 설립('85) 초기 거래 질서 확립, 부정 거래행위 예방 등을 위해 유통종사자(경매사·중도매인·도매법인 등)에 대한 교육 필요성 제기되어,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는 도매시장 내 거래 질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였으며, 유통종사자들의 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개장 초기에 비해 향상되었는 바, 의무교육 필요성은 감소하고 있다는 입장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75조제2항제1호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에는 같은 항 제2호의 ‘경매사로 신규임용 또는 임명된 자’가 포함⁹⁾되므로 같은 항 제2호는 이를 제외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법 제90조제3항제4호의2는 동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 결과 지난 5년간 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음.

<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제75조(교육훈련 등)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개정안에 따라 새로이 교육훈련 의무이수자로 규정되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과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

9) 안 제75조제2항제2호의 ‘경매사로 신규임용 또는 임명된 자’의 ‘경매사’는 제75조제2항제1호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와 동일함

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도 교육의무의 이행력,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16

I.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소비지 농산물유통 현장에서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경영인과 실무인력의 전문성 향상으로 농산물 유통혁신을 선도할 산업인력 육성
- 생산·가공·유통 종사자 등 대상 일반(단기) 및 전문(장기)교육 등 추진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교육훈련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교육훈련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24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점)			지표 산출시기	측정방식
		2021	2022	2023		
■ 교육만족도 (단위 : 점)	91.0	91.1	93.5	93.9	`24.12	교육생 설문조사 (최고점 100점 기준)
■ 교육이수율 (단위 : %)	99.4	96.7	99.1	99.4	`24.12	(교육이수인원/ 교육등록인원)×100

4. 지원형태 및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24년부터 농특회계로 이관)
- 사업기간 : 2013년~계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4년 이후
■ 농식품유통교육훈련	2,089	2,095	1,976	1,571	연 2,300
－ 국고보조	2,089	2,095	1,976	1,571	연 2,300

II.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업 위탁

2. 지원대상

가. 교육기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교육원

나. 교육대상 : 농식품 생산 · 가공 · 유통 · 소비 관련자

- 농업인, 농협, 산지조직, 도매시장, 공판장, 유관기관 · 단체, 공무원 등
- 유통 관련업체(유통 · 식자재 · 가공 · 외식 · 수출 · 급식업체 등)

다. 사업규모

구 분	2023년 계획(A)		2024년 계획(B)		증감(B-A)	
	과정 수	인원(명)	과정 수	인원(명)	과정 수	인원(명)
합 계	54	5,300	48	5,260	△6	△40
일반교육	45	4,915	44	4,980	△1	65
심화교육	9	385	4	280	△5	△105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식품 유통교육 추진에 소요되는 교육비, 교육진행 경비, 운영비 등
- 국고 지원비율 : 40~100%

일반교육	- 교육비 국고 80% / 교육생 자부담 20%* - 운영비 국고 100%
전문교육	- 교육비 국고 50%(단, 대규모 법인은 국고 40%) / 교육생 자부담 50~60% * 대규모 법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 사이트(www.egroup.go.kr) 공시 기준 - 운영비 국고 100%
교육정보화	- 국고 100%

* 기재부 예산심의 의견에 따라 `24년부터 교육생 자부담 20% → 50% 상향